

##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72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이성윤 · 서영교  
김한규 · 박균택 · 박지원  
김기표 · 손 술 · 김동아  
김남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,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공소청법」 부칙을 통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, ‘검찰청’, ‘대검찰청’, ‘고등검찰청’, ‘지방검찰청’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·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, 「검찰청법」 인용규정을 「공소청법」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·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·기간 인정, 검사

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,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,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(안 부칙 제1조 등).

##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“시행한다”를 “시행하고,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에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5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36조제1항”을 “「공소청법」 제4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36조제1항”을 “「공소청법」 제44조제1항”

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)”을 “(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검찰청별”을 “공소청별”로 한다.

④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43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해임(解任)”을 “파면(罷免), 해임(解任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·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의4제1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임”을 “파면, 해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전단 중 “해임”을 “파면, 해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징계의 집행은 건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·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

청장이 하고, 파면·해임·면직·정직·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.

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8조제6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호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,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 및”으로 한다.

⑧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⑨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7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6조의2제4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6조의4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7조제2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0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90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의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마목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타목(중전의 카목) 본문 중 “아목 및 차목”을 “아목, 자목 및 카목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아목 및 차목”을 “아목·자목 및 카목”으로 한다.

아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

⑪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⑫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의4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제3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 검사·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·직원, 경찰”로 한다.

제16조제6항제1호 중 “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”을 “공무원,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1호 중 “경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·경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 검사·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·직원, 경찰”로 한다.

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고등검찰청”을 각각 “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

⑮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호 중 “법원·검찰”을 “법원·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경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⑯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, ““검사장등””을 ““지방공소청장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전단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전단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검사장등에게”를 “지방공소청장등에게”로, “검사장등이”를 “지방공소청장등이”로 한다.

⑱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검사장 등의 조치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 본문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⑲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11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8조”로 한다.

㉖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7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㉗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소속검찰청”을 “소속 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㉙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(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㊸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고등검찰청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(檢事長)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검사장·지청장”을 “각급 공소청장·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2의 제목 “(검사장 등의 조치)”를 “(각급 공소청장 등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검사장·지청장”을 “각급 공소청장·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47조 본문 중 “검사장 등”을 “각급 공소청장 등”으로, “검사장·지청장”을 “각급 공소청장·지청장”으로 한다.

㉓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·등기사무직렬·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”을 각각 “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·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”로 한다.

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고등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

다.

제40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검사장의 조치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11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8조”로 한다.

제21조 본문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㉖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㉗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제8호 중 “검찰청의 검사장”을 “공소청의 장”으로 한다.

㉘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 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㉞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)”를 “(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공소청으로의 송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소속 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4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㉟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録과保存登記등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장”으로, “그 地方檢察廳”을 “그 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地方檢察廳 檢事長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, “그 地方檢察廳”을 “그 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㊱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



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315호 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④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

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④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검사”를 “지방공소청 검사”로 한다.

④②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④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④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④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10호 중 “검찰청, 경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한다.

④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④⑦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管轄地方檢察廳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후단 중 “管轄地方檢察廳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管轄地方檢察廳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”으로, “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은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”으로 한다.

④⑧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④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⑤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<51>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등기주사보,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”를 “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”로 한다.

<52>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<53>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1조제1항제4호 중 “법원주사보·검찰주사보”를 “법원주사보·형사법무주사보”로 한다.

<54>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, 경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10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7조”로 한다.

<55>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<56>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3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 검사·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·직원, 경찰”로 한다.

<57>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제1항 중 “檢察”을 “검사 직무”로 한다.

제125조 중 “검찰”을 “검사 직무”로 한다.

제126조 중 “검찰”을 “검사”로 한다.

제128조 중 “檢察, 警察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”로 한다.

<58>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경찰·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·경찰·공소청

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“검찰청””을 ““공소청””으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지방검찰청(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“검찰청””을 ““공소청””으로 한다.

<59>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검찰청 차장검사”를 “공소청차장검사, 중대범죄수사청 차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<60>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<61>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법원·검찰청·경찰관서”를 “법원·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·중대범죄수사청·지방중대범죄수사청·경찰관서”로 한다.

제87조 중 “경찰관서”를 “경찰서 등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1조의2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등) ①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.

1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
2.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

② 다음 각 호의 근무 기간은 「집행관법」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에 합산한다.

1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
  2.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
- ③ 부칙 제9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,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8조제1항 본문 및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·관리(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에는 설치·운영을 말한다)하는 것으로 본다.
-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「해양경찰법」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「검사징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⑥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「검사징계법」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⑦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<u>시행한다</u>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시행하고</u>,<br/><u>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27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37조제2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46조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54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55조의5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1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36조</u></p> |

제1항을 “「공소청법」 제44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36조 제1항”을 “「공소청법」 제44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)”을 “(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검찰청별”을 “공소청별”로 한다.

④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43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해임(解任)”을 “파면(罷免), 해임(解任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은 임기가

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·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서기는 해당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의4제1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임”을 “파면, 해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전단 중 “해임”을 “파면, 해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·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, 파면·해임·면직·정

직·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.

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호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,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 및”으로 한다.

⑧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⑨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7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

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 
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 
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 
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  
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
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  
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  
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  
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  
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  
다.

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  
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  
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6조의2제4항 중 “지방검찰청  
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 
한다.

제66조의4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 
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 
한다.



제67조제2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0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90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의

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마목 중 “대검찰청”  
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 
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  
부터 하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  
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 
고, 같은 호 타목(종전의 카목)  
본문 중 “아목 및 차목”을 “아  
목, 자목 및 카목”으로 하고, 같  
은 목 단서 중 “아목 및 차목”을  
“아목·자목 및 카목”으로 한다.

아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  
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  
수사관

⑪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 
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  
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 
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⑫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116조의4제2항 중 “지방검찰

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제3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 검사·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·직원, 경찰”로 한다.

제16조제6항제1호 중 “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”을 “공무원,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1호 중 “경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·경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 검사·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·직원, 경찰”로 한다.

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고등검찰청”을 각각 “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⑮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호 중 “법원·검찰”을 “법원·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경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⑯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, ““검사장등”

을 ““지방공소청장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전단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전단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검사장등”을 “지방공소청장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검사장등에게”를 “지방공소청장등에게”로, “검사

장등이”를 “지방공소청장등이”로 한다.

⑱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검사장 등의 조치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 본문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⑲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

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대검찰  
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 
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 
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「검찰  
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하  
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  
다.

제8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”  
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 
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 
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 
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 
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  
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  
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 
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  
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 
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 
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  
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⑳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 
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7조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  
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 
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「검찰청  
법」 제11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 
제58조”로 한다.

㉒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7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  
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㉓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 
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
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서울중앙지방  
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중앙지  
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  
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소속검찰청”  
을 “소속 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  
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

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(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고등검찰청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(檢事長)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서울고등검찰

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서울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검사장·지청장”을 “각급 공소청장·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2의 제목 “(검사장 등의 조치)”를 “(각급 공소청장 등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검사장·지청장”을 “각급 공소청장·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47조 본문 중 “검사장 등”을 “각급 공소청장 등”으로, “검사장·지청장”을 “각급 공소청장·지청장”으로 한다.

㉔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·등기사무직렬·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”을 각각 “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·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”로 한다.

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고등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

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검사장의 조치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「검찰청법」

제11조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8조”로 한다.

제21조 본문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㉓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제8호 중 “검찰청의 검사장”을 “공소청의 장”으로 한다.

㉕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 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

소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

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  
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  
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  
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 
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  
소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 중 “지방검찰  
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 
같은 항 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 
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㉕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형사처분 등을  
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)”  
를 “(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 
공소청으로의 송치)”로 하고, 같  
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
본문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  
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  
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소속 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4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③⑦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장”으로, “그 地方檢察廳”을 “그 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地方檢察廳 檢事長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, “그 地方檢察廳”을 “그 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③⑧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



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㉔ 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

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315호 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④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 
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 
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 
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 
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“중대  
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대검찰  
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경찰청”을  
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 
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「검찰  
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하  
다)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  
다.

제9조제5항 중 “「검찰청법」  
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을  
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 
전단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 
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고등검사장”을  
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 
조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  
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

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  
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
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 
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  
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  
다.

④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  
청검사”를 “지방공소청 검사”로  
한다.

④②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 
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18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또  
는 지방검찰지청”을 “지방공소  
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 
한다.

④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
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  
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 
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④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  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④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10호 중 “검찰청, 경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한다.

④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④⑦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管轄地方檢察廳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후단 중 “管轄地方檢察廳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管轄地方檢察廳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”으로, “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은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”으로 한다.

④⑧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④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⑤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<51>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등기주사보,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”를 “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”로 한다.

<52>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<53>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1조제1항제4호 중 “법원주사보·검찰주사보”를 “법원주사보·형사법무주사보”로 한다.

<54>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, 경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10조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57조”로 한다.

<55>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

소청장”으로 한다.

<56>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3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 검사·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·직원, 경찰”로 한다.

<57>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제1항 중 “檢察”을 “검사 직무”로 한다.

제125조 중 “검찰”을 “검사 직무”로 한다.

제126조 중 “검찰”을 “검사”로 한다.

제128조 중 “檢察, 警察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”로 한다.

<58>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경찰·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·경찰·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



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“검찰청””을 ““공소청””으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지방검찰청(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“검찰청””을 ““공소청””으로 한다.

<59>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검찰청 차장검사”를 “공소청차장검사, 중대범죄수사청 차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<60>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<신 설>

<61>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법원·검찰청·경찰관서”를 “법원·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·중대범죄수사청·지방중대범죄수사청·경찰관서”로 한다.

제87조 중 “경찰관서”를 “경찰서 등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1조의2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등) ①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.

1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
2.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

② 다음 각 호의 근무 기간은 「집행관법」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에 합산한다.

1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

2.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

### 한 기간

③ 부칙 제9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,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8조제1항 본문 및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·관리(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에는 설치·운영을 말한다)하는 것으로 본다.

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「해양경찰법」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「검사징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⑥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임기에 관하여는 「검사징계법」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⑦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